

충청북도 구제역 피해농가
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손 자 용

충청북도 구제역 피해농가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안건은 2011년 5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5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가축시설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납세자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 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얻어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2010. 12월 ~ 2011년도까지 충청북도내에서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가축시설물(건축물)에 대한 2011년도 과세분 지역자원시설세 100% 감면.

4. 검토의견

금번 안건은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가축시설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납세자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, 안건의 주요 내용은

- 2010년 12월부터 2011년까지 충청북도내에서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가축시설물(건축물)에 대한 2011년도 과세분 지역자원시설세를 100% 감면하는 것임.

본 안건은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100%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다만,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이 280가구 11,813천원으로 가구당 42,189원밖에 되지 않아 감면안이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음.

또한 구제역 피해규모가 큰 괴산, 음성군이 진천군에 비해 감면규모가 적은 사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.

붙임 : 충청북도 구제역 피해농가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안 1부. 끝.